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67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이춘석·정준호·위성곤

김윤덕 • 윤종군 • 윤준병

안호영 • 이원택 • 임미애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대규모 공공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각 지방의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주택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요구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4년 4월 기준 정비기

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 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의 자본을 확충하고 지역 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제9조제2 항제2호라목 및 제3호라목 신설). 법률 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 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지원
 - 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	제9조(기금의 용도) ①		
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		
	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출자금 지원		
<u>9.</u> (생 략)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②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	2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		
	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의2. (생략)	2의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	3		

계에 대한 융자 가. ~ 다. (생 략) <u><신 설></u>

3의2. ~ 6. (생략) ③ ~ ⑥ (생략) _____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
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3의2.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